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11. 14(수) / 총 3매(본문2, 붙임 1)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정의헌, 주무관 이진종 • ☎ (044) 201-4244, 4246
	항공운항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상수, 서기관 김봉진, 주무관 조동현 • ☎ (044) 201-4259, 4279, 4314
	항공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강경범, 주무관 김유철 • ☎ (044) 201-4284, 4311, 4286
보 도 일 시		2018년 11월 15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15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교통부,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16억 2천 5백만 원 부과

「제주항공 항공위험물운송 규정위반」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 확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금일 제2018-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**제주항공**에 대해 **과징금 90억 원**을 **확정**하였다.

○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, 제주항공은 **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**하여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*을 부과 받았으며, 이번 **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**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.

*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(건당 9억원 x 20건)을 1/2 감경한 90억원 부과

□ 그밖에 **신규로 상정된 5건 중**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**제주항공과 에어서울**에 **과징금 각각 3억 원**,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**이스타항공**은 **과징금 4.2억 원**,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**에어인천**은 **과**

징금 5백만 원,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**대한항공**에게 **과징금 6억 원**이 각각 처분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**안전법령 위반**에 대해서는 **엄격히 처분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이진종 주무관(☎ 044-201-4246), 항공운항과 김봉진 서기관(☎ 4279), 항공기술과 강경범 사무관(☎43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안건별 행정처분 세부내용** (재심 1건, 신규 5건)

□ (처분량) • 항공사: 과징금 106억2천5백만원, • 종사자: 자격증명 효력정지 105일

상정안건 (처분대상)	심의결과				비고
	과징금 (억원)	운항정지 (일)	자격정지 (일)	불처분	
① 제주항공, 위험물 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리튬배터리 등 위험물 운송 <재심>					
• 항공사	90.0	-			▪ 원처분 유지
② 제주항공 506편, 주기장에서 후진 중 항공기 정지 <신규>					
• 항공사	3.0	-			▪ 항공사의 사후 안전개선조치를 감안 1/2감경(6억→3억)
• 조종사			15	-	▪ 조종사의 과실이 의도적이지 않음을 감안 1/2감경(30일→15일)
③ 에어서울 702편, 후진 중 파킹브레이크 조작으로 전방바퀴 손상 <신규>					
• 항공사	3.0	-			▪ 항공사의 사후 안전개선조치(재발방지 특별교육 등) 감안 1/2감경(6억→3억)
• 조종사			30	-	▪ 원처분 유지
④ 이스타항공 631편, 항공기 탑재서류를 탑재하지 않고 운항 <신규>					
• 항공사	4.2	-			▪ 원처분 유지
• 조종사			15	-	▪ 항공사의 관리책임이 크고, 조종사의 운항준비 시간 촉박 등을 감안 1/2감경(30일→15일)
⑤ 에어인천 322편, 정비 적절성 및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위반 <신규>					
• 항공사	0.05	-			▪ 신생항공 초기단계에서 법령 해석상의 오류 및 위규사실 인정을 고려 1/2감경(천만원→5백만원)
• 정비사			15	-	▪ 상기와 동일사유 1/2감경(30일→15일)
⑥ 대한항공 672편, 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항 <신규>					
• 항공사	6.0	-			▪ 원처분 유지
• 정비사			30	-	▪ 원처분 유지

참고 **안건별 사건개요**

□ (심의 안건1) 제주항공 위험물운송 규정 위반

○ 제주항공(홍콩지점)이 우리부(국토교통부장관)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(리튬배터리)을 운송*한 사실을 우리부 감독관이 해외지점 점검 시 적발(홍콩지점, '18.4.26)

* 항공안전법 제70조제1항에 따라,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

** '18.4.16~25 운송장번호 806-11052252(4개, 104kg) 등 **4건 적발**

○ 추가 자료를 수집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한 다른 위험물을 추가로 적발함(제주항공 김포사무실, '18.5.9)

* '18.1.1~3.31 운송장번호 806-10968112(15개, 184kg) 등 **16건 적발**

□ (심의 안건2) 제주항공 506편 푸쉬백 중 전방 바퀴 손상

○ '18.5.15(화) 12:53분경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506편(제주→김해) 출발을 위해 3번 주기장에서 뒤로밀기 중 항공기가 정지되며 토잉카로부터 전방바퀴가 이탈, 손상

□ (심의 안건3) 에어서울 702편 푸쉬백 중 전방 바퀴 손상

○ '18.5.21(월) 08:30분경 인천공항 에어서울 RS702편(인천/다카마스) 출발을 위해 항공기 뒤로밀기 하며 동시에 엔진시동 중, 토잉 연결부가 부러짐

□ (심의 안건4) 이스타항공 631편 운항증명서 사본 미탑재 상태 운항

○ '18.5.24.(목) 이스타항공 631편이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에서 출발준비 중 일본항공국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항공

기내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(AOC) 사본이 미탑재되어 있음을 지적함

○ 운항승무원은 일본 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이스타항공 본사(종합통제실)로 부터 AOC 사본(전자파일)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제시하였고, 감독관은 서류 확인(사진촬영) 후 문제가 없다는 구두 답변(“OKAY, NO PROBLEM”)과 함께 점검 완료함

○ 일본항공국에서 적발사실을 아국으로 발신(5.25)하였으며, 아국은 항공법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통보(6.4)

□ **(심의 안건5) 에어인천 정비적절성 및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위반**

○ ‘14. 5. 15. 에어인천 322편 항공기(HL8291, 인천→나리타)가 18:34에 **인천공항을 이륙** 하였으나,이륙 후 20분경과 후 2번 엔진 유압계통 유량·유압이 급감하여 인천공항으로 19:24에 회항 함

□ **(심의 안건6) 대한항공 672편 객실여압 이상으로 회항**

○ ‘18.8.8.(수) 1:30경 대한항공 672편 항공기가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하여 상승 중 여압계통 이상으로 쿠알라룸푸르공항으로 회항(2:48분경)